

## 화정면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결격사유 안내

화정면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9조(후보자의 자격) ~ 제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기탁금, 후보자 등록, 후보자 사퇴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후보자 등록 및 결격사유 안내자료 1부. 끝.

2020년 6월 10일

화정면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9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여수시 화정면 거주자(본적지 포함)중 3년미만 거주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기탁금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범위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기탁금 납부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

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는 본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25일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 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